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12. 3 선고 2013가단559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종회

피고(선정당사자)B

변론 종결2015. 11. 17.

판결 선고2015. 12. 3.

주 문

1. 피고(선정당사자) B 및 선정자 C, D, E, F, G는 소외 H 종중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임야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. 9. 30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 B 및 선정자 C, D, E, F, G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I은 1920. 12. 25. 별지 제1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그 소유로 사정을 받았고, I이 사망한 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J은 1982. 1. 18.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나. J은 1985. 10. 6. 사망하여 처(妻)인 K과 자식들인 선정자 E,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'피고'라 한다) B, 선정자 F, C, D, G가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다. 그 후 K이 2009. 2. 19. 사망하여 자식들인 피고 B, 선정자 F, C, D, G가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피고 B와 선정자 E, F, C, D, G(이하 피고 B와 위 선정자들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'피고 및 선정자들'이라 한다)가 별지 2 기재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5, 6, 17 내지 20호증(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6호증의 1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 항변

피고는,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,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1) 인정사실 가) L의 36세손인 M의 자손인 N, O, P, Q 4형제의 후손들은 각각 별도의 종중을 구성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1965년 이전부터 통합 종중인 원고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는데, 위 네 종중의 종원들은 1998. 1. 2.(음력) 정식으로 원고를 창립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.

나) 원고는 고창군 R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, 관할 관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재한 후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, 구성원, 임원 선출 및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.

다) 원고는 2014. 1.경 족보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115명의 종중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2014. 2. 1.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원 38명 모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13, 16, 21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)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H 종중은 S 40세손인 N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.

2)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H 종중의 재산목록[갑 제25호증의 2(나) 두 번째 장]에는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.

3) I은 1914.경부터 1920.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마찬가지로 전북 고창군에 소재한 T 임야 638m², U 임야 437m² 및 위 U에서 분할된 V, W, X, Y 임야 2,031m² 및 위 Y에서 분할된 Z, AA 전 185m², AB 전 858m², AC 전 1,607m², AD 전 2,898m² 및 위 AD에서 분할된 AE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H 종중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다.

4)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와 H 종중의 공동선조인 M의 처(妻)인 AF의 분묘 및 13기의 원고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.

5) 1982.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J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제실을 보수하고 공동선조 M의 2세손 AG의 묘비를 건립하였으며, 고창군산림조합에서 작성한 '2013년 AH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'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 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다.

6) H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AI은 족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남녀 종원 75명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였고, 위 소집통지에 의해 개최된 2014. 9. 15.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 20명 모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8, 9, 25, 27 내지 30, 37, 38호증, 증인 AJ, AK의 각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H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I 명의로 사정받아 I의 상속인인 J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.

2) 그리고,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종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. 9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4. 9. 30.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.

3)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H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4. 9. 30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정훈

별지